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9

2019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8일, 김태수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18년 12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2월 25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제6조제2항제4호)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신설 안 제10조제3항)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등[1]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2]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3]의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이하 생략)

3)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16.1.21 시행)된 바 있으며, 발주청(공공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제3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을 준용하여 동 조례에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 각 호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까지 포함되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발주청 외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및 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생략) ③ <u>제1항에</u>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u>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u> ―――――――――――――――――― ―――――――――――――――――― ―――――――――――――――. **<u>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u>**

2)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상위법령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 일부가 제284회 정례회 중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이미 반영[4]되어 있으며, '해촉(解囑)'의 경우 종전에는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 또한 용어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해촉을 사용하고 있어 '해촉'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에[5]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4) 제28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06호(시장제출)은 '18년 10월 17일, 동 조례안 제249호는 10월 18일 제출되었음. 제284회 정례회 의안 제출 기한이 10월 17일까지인 바, 제206호만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되었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8판)」('17년 12월)

[참고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수정안 요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환경영향평가법」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일부 개정 조문이 기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9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일부 개정 조문이 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물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 제5조제1호 중 “마련할”, 제6조제2항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마련하여”, 제18조제3항 중 “마련하거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할”을 현행과 같이 함.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물환경보전법」”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마련할”을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제1항에”를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안 제18조제1항 “마련하여”, 같은 조 제3항 중 “마련하거나”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19조제4항 중 “환경영향으로 인한”을 “환경영향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2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할”을 현행과 같이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3.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 ~ 나. (개정안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 ----------	다. (현행과 같음)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 ----------	라. (현행과 같음)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마. ~ 사.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마련하여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
1.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 ---------- 마련할 --	1.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2. ~ 3. (개정안과 같음)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생 략)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 「물환경보전법」 ----------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개

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행하려는 ----------	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생 략)	제8조(의견수렴 등)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수렴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 수렴하려는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생 략)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

	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 대행하려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 ---------- 한 번만 ----------.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협의) ① ---------- 마련하여 ----------.	제18조(변경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③ ---------- 마련하거나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생 략)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환경영향으로 따른 ----------.	④ ---------- 환경영향에 따른 ----------.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	⑤ ----------	⑤ (개정안과 같음)

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재개하려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하려는 ----------.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② ~ ⑧ (개정안과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	2. ---------- 직접·간접--	2. (개정안과 같음)

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⑧ ~ ⑨ (개정안과 같음)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위촉을 해제할 ------.	제24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준용) ---------- ----- 따른다.	제33조(준용)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수렴하고자 하는”을 “수렴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대행하고자 하는”을 “대행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한 차례만”을 “한 번만”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환경영향으로 따른”을 “환경영향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개하고자 하는”을 “재개하려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제2호 중 “직ㆍ간접”을 “직접ㆍ간접”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예산”을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제33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 --- 시행하려는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생 략)	제8조(의견수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 수렴하려는 ---------- ---------- ----------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생략)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 ---------- 대행하려는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 ---------- ---------- ------. ---------- ---------- ---------- ---------- ----------. ---------- ---------- -- 한 번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생략)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④ ---------- ------- 환경영향에 따른 ---------- ---------- ---------- ----------

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재개하려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하려는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직접·간접----------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 ----------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준용) ---------- ---------- 따른다.